

의안번호	2217235
의 퇴 인	서영교 의원
회 답 일	2026.05.13.
추계번호	26C1300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9조 (휴직의 사유)	(제1항)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,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. ~ 13. (현행과 같음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9조 (휴직의 사유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·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임
- 현행 「사립학교법」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음
 - － 자녀 1명당 최장 3년의 휴직이 가능하며,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이 준용되어 교육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됨¹⁾

1) 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

제24조의9(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) 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「교육공무원 승진규정」 제11조제1항제1호나목, 「공무원보수규정」 제15조제6호 및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1조의3 등 국립·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.

- 이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은 1~6개월에 대해서는 월봉급액의 100%, 7~12개월에 대해서는 80%에 해당하는 금액임
 - 참고로, 해당 규정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 등 일정 사유에 대하여 휴직 기간 및 지급 상한액을 달리 정하고 있음²⁾
 -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범위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임
- 개정안에 따라 육아휴직자가 증가하는 경우, 사립학교에 대한 시·도교육청의 재정지원이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현행 「사립학교법」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시·도교육청은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음³⁾
 - 구체적으로, 시·도교육청은 기준재정수요액(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등)에서 기준재정수입액(입학금, 수업료 및 법인전입금 등)을 공제한 부족분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급함
 - 따라서, 개정안 시행으로 사립학교의 인건비가 증가하는 경우 시·도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 규모가 확대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추가재정소요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 확대로 신규 발생할 육아휴직자의 ①육아휴직수당과 ②대체인력 인건비에서 휴직자의 기존 인건비를 차감한 금액임

□ 그러나, 현시점에서 휴직 인원 및 대체인력 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어려움

2) 육아휴직수당의 하한액은 70만원이며, 상한액은 휴직 사유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음

(단위: 만원)

구분	~2개월	3개월	4개월	5개월	6개월	7개월~
일반 교육공무원	250	250	200	200	200	160
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	250	300	350	400	450	160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모 또는 부	300	300	200	200	200	160

자료: 국가법령정보센터

3) 「사립학교법」

제43조(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- 추가재정소요 산출을 위해서는 신규 휴직 대상자 인원과 월봉급액 등 기초자료가 필요하나,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 - (휴직 인원) 만 9~12세 또는 초등학교 3~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 중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람으로, 자녀 연령대에 따라 휴직 행태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기 어려우므로 현행 법령에 따른 휴직자 통계만으로 대상자를 추계하기 어려움
 - (월봉급액) 육아휴직수당은 휴직자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나, 현시점에서 휴직자의 직급·호봉 등 보수 분포를 알 수 없어 예측에 한계가 있음
 - 또한, 육아휴직이 발생하는 경우 대체인력 투입 여부 및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에 한계가 있음
- 이에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(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정현수	이제정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현수	02-6788-4627	jhs@assembly.go.kr